

2026년도 제61회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계획 공고

2026년도 제61회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6일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 위원장

1 시험서류의 종류

가. 영어성적인정 신청서류

- 제1차시험 응시자는 영어성적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인영어시험에서 영어과목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했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 제1차시험 응시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① 영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구분	토 플(TOEFL)		토 익 (TOEIC)	텝 스 (TEPS)	지텔프 (G-TELP)	플렉스 (FLEX)	아이엘츠 (IELTS)
	PBT	iBT					
일반응시자	530점 이상	71점 이상	700점 이상	340점 이상	Level 2 65점 이상	625점 이상	4.5점 이상
청각장애인 응시자	352점 이상	35점 이상	350점 이상	204점 이상	Level 2 43점 이상	375점 이상	-

* 청각장애인 응시자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지텔프는 제외)에서 듣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취득한 점수임

② 영어성적인정 신청

-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 <http://cpa.fss.or.kr>) ‘영어성적 인정신청’란에서 해당 공인어학시험 종류를 선택하고 응시일자, 취득 점수 등을 정확하게 입력한 후 제출합니다.
- 영어시험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한 성적 확인 가능 여부에 따라 영어 시험 종류별로 신청 시기를 다르게 운영하고 있사오니, 본인이 응시한 영어시험 종류를 확인한 후 신청 가능 시기에 맞추어 신청합니다.

① 온라인 전송방식 진위확인 영어시험(토익, 텁스, 지텔프)

- (인정 신청 방법) 영어시험의 시험기관에서 정한 성적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 만료 전까지 홈페이지에서 사전 영어성적인정 신청이 연중 가능합니다.
- (영어성적인정 접수 마감 시점) ‘26년 제1차시험의 영어과목 합격을 위해서는 1차 시험일 전일 23:59까지 영어성적인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26년 제1차시험 시행일 전일을 지나서 영어성적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26년 제1차시험 영어과목 성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온라인 전송방식 불가 영어시험(토플, 플렉스, 일본토익, 아이엘츠 등)

- (인정 신청 방법) 성적 진위 확인 기간 확보를 위해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의 1일부터 10일까지 사전 인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의 11일부터는 성적인정 신청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25.12월 중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험성적은 ’25.11.10.까지 신청 할 수 있으므로, ’25.11.11. 이후 인정신청 불가
- (영어성적인정 접수 마감 시점) ‘26년 제1차시험의 영어과목 합격을 위해서는 1차 시험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의 1일부터 10일까지 (‘26.2.1. ~ 2.10.) 인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26.2.11. 이후에 영어성적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26년 제1차시험 영어과목 성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26.2월 중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성적의 경우 1차 시험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전월 10일(‘26.1.10.)까지 인정 신청해야 합니다.

- 유효기간이 경과 된 경우 시험성적에 대한 진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유효기간 만료 전 영어성적 인정신청 후 ‘합격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 유효기간 만료 전 신청이 아닌, 유효기간 만료 전 ‘합격인정’을 받은 경우임에 유의
- 영어성적인정 신청 당시 공인 영어시험기관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성적에 대한 진위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영어성적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더라도 영어성적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유효기간(시험일 후 2년간)이 경과하기 전에 영어성적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국내외 공인영어시험기관의 전산 오류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유효기간 경과, 당해연도 영어성적 불인정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으므로,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인정 신청할 것을 권고합니다.
- 영어성적인정 신청의 경우 성적표와 신청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적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로 성적표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영어시험성적은 국내외 공인 영어시험기관의 정규시험 성적만 인정됩니다. 수시시험 또는 특별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토익의 경우 국외에서 취득한 성적은 일본에서 취득한 정규시험의 성적만 인정됩니다.(성적확인동의서 1부 제출)

※ 한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24.1.1.부터 영어시험의 인정기간이 5년(기준: 2년)으로 연장되었으나, 이는 유효기간이 '24.1.1. 이후 만료되는 성적으로서 '24.1.1. 전에 ‘합격인정’된 성적부터 적용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나. 학점인정 신청서류

-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등(이하 ‘응시자’라 한다)은 학점인정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시험응시에 필요한 학점(회계학·세무 12학점, 경영학 6학점, 경제학 3학점, 정보기술(IT) 3학점, 총 24학점)을 취득하였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 제1차시험 응시자와 회계업무 경력이 있는 제1차 시험 면제자(예정자 포함)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① 학점인정 신청서

- 공인회계사 시험 제도 개편으로 ’25.1.1. 이후 사전학점 이수제도가 변경^{*}되었으니, 학점인정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현행) 회계학·세무 12학점, 경영학 6학점, 경제학 3학점, 정보기술(IT) 3학점 총 24학점
(변경전) 회계학·세무 12학점, 경영학 9학점, 경제학 3학점 총 24학점
- 응시자가 공인회계사 홈페이지 ‘학점인정과목 검색’란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과목이 학점인정과목에 해당하는지 검색합니다.
- 학점인정과목에 해당하면 홈페이지에서 학점인정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인쇄하여 제출합니다.
- 학점인정 신청 시 내용이 동일하거나 상당부분 유사한 과목을 중복 이수한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과목에 대한 학점만 인정됩니다.
- 학점인정과목에 해당되지 않으면 ‘다’의 과목인정 신청을 먼저 하여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의 인정을 받은 후 학점인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취득증명서

-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을으로 학점이수 사실을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교)의 장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취득증명서* 원본을 제출합니다.
 - * 홈페이지 ‘자료실 – 기타 서식·자료’ 게시 서식 참고
 -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이수하여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장(학점은행센터)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 취득증명서 원본을 제출합니다.
- ※ 학점취득증명서가 아닌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적증명서에 **형광펜** 등으로 회계학·세무 관련 과목(12학점), 경영학 과목(6학점) 및 경제학 과목(3학점), 정보기술(IT) 과목(3학점)을 표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과목인정 신청서류

- 응시자가 학점인정과목(홈페이지 ‘자료실-학점인정과목검색’에서 확인)에 해당되지 않는 과목을 **학점인정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목인정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시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① 과목인정 신청서

- 홈페이지에서 과목인정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인쇄하여 제출합니다.

② 강의계획서 및 담당교수의견서

- 신청과목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강의계획서**(실제 수강 학기 기준, 매주 강의내용 포함) 사본 및 담당교수 **의견서*** 원본을 제출합니다.

* 홈페이지 ‘자료실 – 기타 서식·자료’ 게시 서식 참고

- ※ 강의계획서는 필수 제출 서류이며, 담당교수 의견서는 선택사항으로 필수 제출 서류는 아닙니다.

라. 제1차 시험 면제 신청서류

- 회계업무 경력으로 제1차 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1차 시험 면제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제1차 시험 면제 신청서

- 홈페이지에서 제1차 시험 면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인쇄하여 제출합니다.

② 경력증명서와 소속기관의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

- 경력증명서 원본과 해당기관의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 사본을 제출합니다.
- 2개 이상의 기관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경력기간을 합산^{*}하므로 해당 기관이 발급한 경력증명서 원본과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 사본을 각각 제출합니다.

* 「공인회계사법」 §6①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경력기간을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합산

※ 제1차 시험 면제자에 대한 자세한 기준 등은 홈페이지 ‘시험안내 – 시험제도 안내’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시험서류의 제출 방법 및 절차

가. 시험서류(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시험서류별 접수기간 중에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접수기간이 아닌 경우, 신청서에 오류가 있거나 시험서류가 일부 누락되더라도 재신청 또는 시험서류의 보완이 불가능하므로 접수 마감일에 임박한 제출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홈페이지에서 응시자 본인이 실명으로 회원가입한 후 회원인증(로그인)합니다.

다. 제출하고자 하는 시험서류의 종류에 따라 홈페이지의 시험서류접수 코너를 이용합니다.

- 영어성적인정 신청서류 제출은 ‘영어성적인정신청’ 코너를 이용
- 학점인정 신청서류 제출은 ‘학점인정신청’ 코너를 이용
- 과목인정 신청서류 제출은 ‘과목인정신청’ 코너를 이용
- 제1차시험면제 신청서류 제출은 ‘경력자 제1차시험 면제신청’ 코너를 이용

라.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확정접수합니다.

- 확정접수한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청내용을 다시 확인한 후 확정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마. 확정접수한 신청서를 홈페이지 내문서보기에서 인쇄합니다.

바. 시험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사. 시험서류 일체가 제출되어야만 접수된 것으로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홈페이지 ‘내문서보기’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합니다.

-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접수기간 중 시험서류 일체를 제출하지 않으면 접수된 것으로 처리하지 않고 임의 종결(무효) 처리합니다.
- 신청서에 오류가 있거나 시험서류가 일부 누락된 경우, 홈페이지 ‘내문서보기’를 통해 재신청 또는 시험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 내에 재신청 또는 시험서류 보완이 완료되지 않으면 임의 종결(무효) 처리합니다. 재신청 또는 시험서류보완 일정 등을 감안하여, 시험 서류는 가급적 조기에 제출할 것을 권고합니다.
- 응시자는 서류 도달·접수여부, 서류보완 요구사항, 처리결과 등을 홈페이지 ‘내문서보기’를 통해 직접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아. 제출된 시험서류는 일체 복사 및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시험서류의 제출 시기

가. 시험서류는 접수기간 중에 접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특히, 2026년 제1차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2025년 하반기 시험서류 접수기간 중에 접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시험서류 제출 시기 >

구 분	2025년 하반기	2026년 상반기
영어성적 인정신청 ¹⁾	상시 사전 인정신청(토익, 텁스, 지텔프) 매월 1일~ 10일(토플, 플렉스, 아이엘츠, 일본토익)	
학점 인정 신청	'25. 9. 8.(월) ~ '26. 1. 9.(금) 18:00	'26. 4. 9.(목) ~ '26. 4. 17.(금) 18:00
과목 인정 신청	'25. 9. 8.(월) ~ '25. 11. 7.(금) 18:00	'26. 3. 23.(월) ~ '26. 3. 31.(화) 18:00
제1차시험 면제신청 ²⁾	-	'26. 3. 4.(수) ~ '26. 3. 17.(화) 18:00

1) 영어성적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성적인정 신청 제출(영어시험 종류별 접수 마감 시점은 공고문 2~3페이지 '영어성적 인정 신청' 참고)

2)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험서류 제출기간 중에 면제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출일 현재 경력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2차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경력기간 충족 증빙서류를 제2차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7영업일 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와 시험서류를 서류접수 마감시각까지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에 제출(영어성적 인정 신청의 경우에는 홈페이지로 신청서 제출)해야 접수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우편의 경우 접수마감일시까지 도달분만 유효)

- 시험서류 접수마감일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과 같지 않으므로, 시험 서류별 접수마감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 접수시에는 수신처가 표기된 봉투레이블(홈페이지 '내문서보기' - 봉투 레이블 출력')을 인쇄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 및 방문 접수시 주소 >

접수방법	주 소
우편 접수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 공인회계사 시험관리팀(우편번호 : 07321)
방문 접수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안내데스크(1층 후문 방향) (서울 지하철 5, 9호선 여의도역 2번 출구 약 150m 앞)

다. 방문 접수의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아니합니다.

라. 시험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한 응시자는 인터넷우체국(<http://www.epost.go.kr>)의 '배달 조회' 코너에서 등기번호를 입력하여 배달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시험서류 제출의 면제

가. 이미 학점인정 신청을 하여 확인받은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아니합니다.

나. 이전에 제출한 영어시험성적의 인정기간 중에는 다시 신청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영어성적 인정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유효한 성적으로 재신청하여 확인을 받아야 '26년 1차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 이전에 제출한 영어시험성적의 인정기간은 홈페이지 '내문서보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 회계업무 경력으로 제1차 시험을 면제받고 이미 학점인정 신청을 하여 확인받은 자는 다시 신청하지 아니합니다.

라. 시험서류 제출의 면제는 현행 공인회계사 시험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5 시험서류의 허위기재 행위에 대한 제재

- 가. 학점인정 신청서류, 영어시험성적표 등 시험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응시자는 부정행위자로 제재합니다.
- 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또한 업무집행 방해로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6 기타 유의사항

- 가. 응시자가 시험에서 요구하는 학점을 취득하였거나 공인영어시험에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한 경우에는 미리 학점인정신청 및 영어성적 인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나. 2026년도 제1차 시험을 위한 과목인정신청, 학점인정신청 접수마감 일이 각각 상이하므로, 시험서류 제출일정 등을 정확히 숙지하여 서류 미접수로 인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학점인정 신청서류를 제출한 후 특정 과목 또는 특정 학기에 이수한 전 과목에 대하여 학점을 포기하여 응시자격이 소명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서를 접수하더라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이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라. 시험에 관한 확정 일정은 2025년 11월에 공고하는 “2026년도 제61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마. 보다 자세한 시험정보는 홈페이지(<http://cpa.fss.or.kr>)를 참고하시거나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 담당자(☎02-3145-7757, 7759, 7754)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